

# 서울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과 서울지방변호사회 간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서

서울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상호 신뢰 바탕으로 공동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본 협약에서 양자를 통칭하여 “양 기관” 이라 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양 기관이 공공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평생교육의 확대와 발전을 위한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 내용)** 양 기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상호 협력한다.

1.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의 평생교육원 강좌 수강 기회 제공 및 할인
2. 평생교육원 강좌 홍보 및 활성화 협조
3. 평생교육원 교육강좌 콘텐츠 개발 협조
4. 기타 양 기관이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비밀 유지)** 양 기관은 본 협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상대 기관의 업무상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 의무는 협약 종료 후에도 유효하다.

**제4조(효력 및 유효기간)** ① 본 협약은 양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② 협약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어느 일방의 해지 통보가 없는 경우, 본 협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제5조(협약의 변경·해지)** ① 양 기관은 상호 협의에 따라 본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그 변경은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어느 일방은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지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최소 30일 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양 기관이 협약 해지에 합의한 경우
2. 일방 당사자가 협약의 내용을 위반하거나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3. 기관 내부 사정으로 협약 유지가 곤란한 경우
4.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제6조(수강신청 및 수강할인 등) 서울지방변호사회 수강신청 및 수강할인에 대한 내용은 [별지]에 따른다.

제7조(기타)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본 협약의 증명을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하고, 양 기관이 서명·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25년 8월 11일



**서울교육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울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원장 변순용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조순열

